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97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김문수・박지원・이광희

이수진 • 조계원 • 허성무

정일영 · 박희승 · 이병진

김우영 · 신정훈 · 정성호

강준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,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(안 제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공휴일 최소 1 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체공휴일) ①・② (생	제3조(대체공휴일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
	지정할 때에는 해당 공휴일 최
	소 1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
	<u>한다.</u>